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KONETIC

규제 및 법률정보

일본, 특정물질의 규제에 의한 오존층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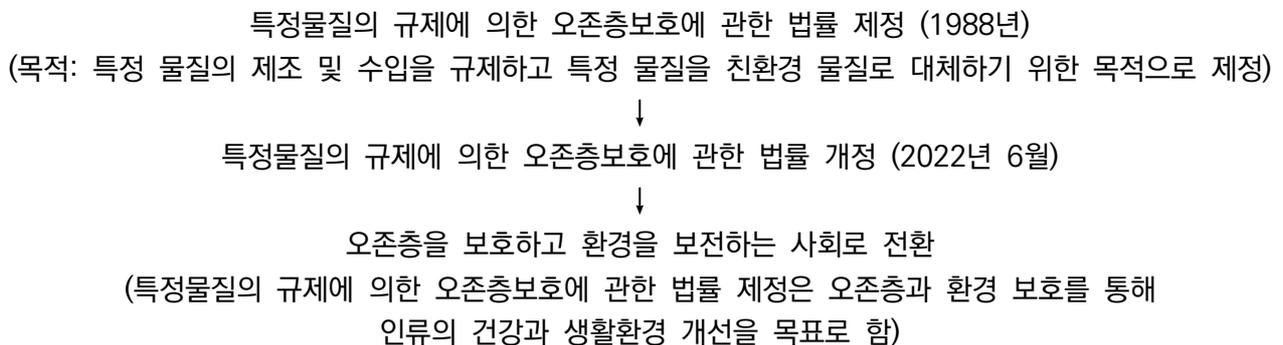
일본, 특정물질의 규제에 의한 오존층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국가 / 지역 : 일본
- 정식명칭 : 「특정물질의 규제에 의한 오존층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번호 : 法律 第53号
- 제정일 : 1988년 5월 20일
- 개정일 : 2022년 6월 17일(현행법령)
- 시행일 : 2022년 6월 17일(현행법령)

I. 개요

- 오존층 파괴로 인해 인류의 건강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이러한 협약과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자국 내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1988년 5월, 본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특정물질의 규제에 의한 오존층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2022년 개정되어 202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 법률은 총 6개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오존층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i) 생산 수량의 지정 및 허가 (ii) 특정 물질의 수출 신고 의무 (iii) 특정물질의 배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업과 개인이 환경 법규를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 일본 정부는 협약 및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특정 물질의 생산 및 소비 기준을 포함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이 법은 △특정 물질의 수출입 허가 및 승인, △특정물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 관련 사항, △특정물질의 대안과 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연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의 개정현황 및 목표



II. 법률의 구성

◆ 특정물질의 규제에 의한 오존층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	번역문
第一章 総則	제1장 총칙
第二章 特定物質等の製造等の規制	제2장 특정 물질 등의 제조 등의 규제
第三章 特定物質等その他の物質に関する届出	제3장 특정 물질 등 기타 물질에 관한 신고
第四章 特定物質等の排出の抑制及び使用の合理化	제4장 특정 물질 등의 배출 억제 및 사용의 합리화
第五章 雑則	제5장 기타 규정
第六章 罰則	제6장 처벌
附則	부칙

III. 주요 법조문

원문	번역문
<p>第一章 総則</p> <p>第一条 (目的) この法律は、国際的に協力して気候に及ぼす潜在的な影響に配慮しつつオゾン層の保護を図るため、オゾン層の保護のためのウィーン条約（以下「条約」という。）及びオゾン層を破壊する物質に関するモントリオール議定書（以下「議定書」という。）の的確かつ円滑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の特定物質等の製造の規制並びに排出の抑制及び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措置等を講じ、もって人の健康の保護及び生活環境の保全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p>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기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고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정확하고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고 특정 물질 등의 제조 규제 및 배출 억제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인간의 건강 보호 및 생활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원문	번역문
<p>第二章 特定物質等の製造等の規制</p> <p>第四条 (製造数量の許可)</p> <p>1. 特定物質等を製造しようとする者は、その種類及び規制年度(議定書の規定に即して特定物質等の種類ごとに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期間をいう。以下同じ。)ごとに、当該規制年度において製造しようとする数量について、経済産業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p> <p>一 第五条の二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者が当該許可に係る数量以下の当該特定物質等を製造するとき。</p> <p>二 第十一条第一項又は第十二条第一項の確認を受けた者が当該確認に係る数量以下の当該種類の特定物質等を製造するとき。</p> <p>三 第十三条第一項の確認を受けた者が当該確認に係る数量以下の当該特定物質等を製造するとき。</p> <p>四 政令で定める一定数量以下の特定物質等を製造するとき。</p> <p>2 前項の許可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経済産業大臣が告示する期間内に、次の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経済産業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p> <p>二 前項の許可を受けて製造しようとする数量</p> <p>三 製造及び貯蔵の場所</p> <p>四 製造設備の構造及び能力</p> <p>五 その製造に係る特定物質等のうち当該規制年度において輸出されることが見込まれるものの数量(第八条第二項において「輸出予定数量」という。)及びその仕向地</p> <p>六 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p> <p>3 第一項第四号の政令で定める一定数量以下の特定物質等を製造しようとする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製造数量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2장 특정 물질 등의 제조 등의 규제</p> <p>제4조 (제조 수량의 허가)</p> <p>1.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종류 및 규제 연도(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특정 물질 등의 종류별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동일)별로, 해당 규제 연도에 제조하려는 수량에 대해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제5조의2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에 관련된 수량 이하의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할 때.</p> <p>2) 제11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의 확인을 받은 자가 해당 확인에 관련된 수량 이하의 해당 종류의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할 때.</p> <p>3) 제13조 제1항의 확인을 받은 자가 해당 확인에 관련된 수량 이하의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할 때.</p> <p>4)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할 때.</p> <p>2.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p> <p>2) 전항의 허가를 받아 제조하려는 수량</p> <p>3) 제조 및 저장 장소</p> <p>4) 제조 설비의 구조 및 능력</p> <p>5) 해당 규제 연도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물질 등의 수량(제8조 제2항에서 "수출 예정 수량"이라 한다) 및 그 수출지</p> <p>6)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p> <p>3. 제1항 제4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수량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p>

원문	번역문
<p>第二章 特定物質等の製造等の規制</p> <p>第五条（輸出用製造数量の指定）</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経済産業大臣は、前条第一項の許可をする場合には、当該許可に係る数量の全部又は一部を輸出用製造数量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輸出用製造数量の指定は、仕向地を定めて行う。 3. 経済産業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に係る者の申請に基づき、その指定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があつたときは、その指定に係る者は、輸出用製造数量に係る特定物質等の製造においては、その製造に係る数量がその製造の時における確定輸出数量（その製造に係る特定物質等（当該指定に係る種類のものに限る。）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規制年度において同項の指定に係る仕向地に輸出されたこと又は輸出されることが確実であることについての経済産業大臣の確認を受けたものの数量をいう。）を超えることとなら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三項の申請の手續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p>제2장 특정 물질 등의 제조 등의 규제</p> <p>제5조 (수출용 제조 수량의 지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허가를 할 경우, 해당 허가에 관련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용 제조 수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용 제조 수량의 지정은 목적지를 정하여 행한다. 3.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에 관련된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 있을 때, 해당 지정에 관련된 자는 수출용 제조 수량에 관련된 특정 물질 등의 제조에 있어, 그 제조에 관련된 수량이 해당 제조 시점의 확정 수출 수량(해당 규제 연도에 지정된 목적지로 수출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은 수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제3항의 신청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다.
<p>第二章 特定物質等の製造等の規制</p> <p>第五条（特定物質等ごとの製造数量の許可）</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の二経済産業大臣は、議定書の的確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四条第一項の許可のほかに、特定物質等及び規制年度ごとに、当該規制年度において製造しようとする特定物質等の数量について、許可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特定物質等ごとの製造数量の許可を行おうとするときは、その旨を告示するものとする。 3. 第四条第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許可について準用する。 	<p>제2장 특정 물질 등의 제조 등의 규제</p> <p>제5조 (특정 물질 등의 제조 수량 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산업대신은 의정서의 정확한 이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허가 외에도 특정 물질 등 및 규제 연도별로 해당 규제 연도에 제조하려는 특정 물질 등의 수량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다.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물질 등 제조 수량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3.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준용된다.

원문	번역문
<p>第二章 特定物質等の製造等の規制</p> <p>第六条（輸入の承認） 特定物質等を輸入しようとする者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二十八号）第五十二条の規定により、輸入の承認を受ける義務を課せられるものとする。</p>	<p>제2장 특정 물질 등의 제조 등의 규제</p> <p>제6조 (수입의 승인) 특정 물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쇼와 24년 법률 제228호)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第二章 特定物質等の製造等の規制</p> <p>第七条（許可等の基準） 経済産業大臣は、我が国の特定物質等の種類ごとの生産量及び消費量が議定書の規定に基づき我が国が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限度を超えるものとならないように、かつ、特定物質等の製造及び輸出入の状況及び動向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第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五条の二第一項の許可、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若しく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変更又は前条の輸入の承認に関する処分を行うものとする。</p>	<p>제2장 특정 물질 등의 제조 등의 규제</p> <p>제7조 (허가 등의 기준) 경제산업대신은, 우리나라의 특정 물질 등의 종류별 생산량 및 소비량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특정 물질 등의 제조 및 수출입 상황 및 동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의2 제1항의 허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또는 전조의 수입 승인에 관한 처분을 행해야 한다.</p>

원문	번역문
<p>第二章 特定物質等の製造等の規制</p> <p>第十条 (許可の条件)</p> <p>1. 第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五条の二第一項の許可又は第八条第一項の増加の許可には、条件を付し、及びこれ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p> <p>2. 前項の条件は、議定書の的確かつ円滑な実施を確保し、又は許可に係る事項の確実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最小限度のものに限り、かつ、許可を受ける者に不当な義務を課することとなるものであつてはならない。</p>	<p>제2장 특정 물질 등의 제조 등의 규제</p> <p>제10조 (허가의 조건)</p> <p>1.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의2 제1항의 허가 또는 제8조 제1항의 증가 허가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2. 전항의 조건은 의정서의 정확하고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거나, 허가에 관련된 사항의 확실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p>
<p>第二章 特定物質等の製造等の規制</p> <p>第十一条 (製造数量の確認)</p> <p>1. 特定物質等を製造しようとする者は、その種類及び規制年度ごとに、特定物質等が経済産業省令、環境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当該規制年度内に破壊されたこと又は破壊されることが確実であること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証明して、当該証明に係る数量の特定物質等 (当該証明に係る種類のものに限る。) を製造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経済産業大臣の確認を受けすることができる。</p> <p>(...)</p>	<p>제2장 특정 물질 등의 제조 등의 규제</p> <p>제11조 (제조 수량의 확인)</p> <p>특정 물질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종류 및 규제 연도별로, 특정 물질 등이 경제산업성령 및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규제 연도 내에 파괴되었거나 파괴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 해당 증명에 관련된 수량의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p> <p>(중략)</p>

원문	번역문
<p>第二章 特定物質等の製造等の規制</p> <p>第十二条 特定物質等を製造しようとする者は、その種類及び規制年度ごとに、特定物質等が当該規制年度内に当該特定物質等以外の物質（当該特定物質等と当該特定物質等以外の物質の混合物を除く。）の製造工程において原料として使用されたこと又は使用されることが確実であること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証明して、当該証明に係る数量の特定物質等（当該証明に係る種類のものに限る。）を製造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経済産業大臣の確認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p>	<p>제2장 특정 물질 등의 제조 등의 규제</p> <p>제12조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종류 및 규제 연도별로, 특정 물질 등이 해당 규제 연도 내에 해당 특정 물질 외의 물질(해당 특정 물질과 해당 특정 물질 외의 물질의 혼합물을 제외)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 해당 증명에 관련된 수량의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p>
<p>第三章 特定物質等その他の物質に関する届出</p> <p>第十三条 1. 政令で定める特定物質等を製造しようとする者は、規制年度ごとに、当該特定物質等が当該規制年度内に政令で定める用途（以下この条において「特定用途」という。）に使用されたこと又は使用されることが確実であることを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証明して、当該証明に係る数量の当該特定物質等を製造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経済産業大臣の確認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p>	<p>제3장 특정 물질 등 기타 물질에 관한 신고</p> <p>제13조 1. 정령으로 정하는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규제 연도마다 해당 특정 물질 등이 해당 규제 연도 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특정 용도"라 한다)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고, 해당 증명에 관한 양의 해당 특정 물질 등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p> <p>(중략)</p>

원문	번역문
<p>第三章 特定物質等その他の物質に関する届出</p> <p>第十七条 (特定物質等の輸出に関する届出) 特定物質等の輸出を行つた者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毎年、前年の輸出数量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3장 특정 물질 등 기타 물질에 관한 신고</p> <p>제17조 (특정 물질 등의 수출에 관한 신고) 특정 물질 등의 수출을 행한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의 수출 수량 및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p>
<p>第四章 特定物質等の排出の抑制及び使用の合理化</p> <p>第十九条 (使用事業者の努力) 特定物質等 (特定物質等以外の物質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含む。以下この条から第二十二条までにおいて同じ。) を業として使用する者は、その使用に係る特定物質等の排出の抑制及び使用の合理化 (特定物質等に代替する物質の利用を含む。次条において同じ。) 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4장 특정 물질 등의 배출 억제 및 사용의 합리화</p> <p>제19조 (사용 사업자의 노력) 특정 물질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에 관련된 특정 물질 등의 배출 억제 및 사용의 합리화 (특정 물질 등을 대체하는 물질의 이용을 포함한다. 다음 조에서도 동일)에 노력해야 한다.</p>

원문	번역문
<p>第四章 特定物質等の排出の抑制及び使用の合理化</p> <p>第二十条 排出抑制・使用合理化指針の公表等)</p> <p>1. 経済産業大臣及び環境大臣は、条約及び議定書の円滑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特定物質等を業として使用する者が特定物質等の排出の抑制又は使用の合理化を図るための指針（以下「排出抑制・使用合理化指針」という。）を定め、これ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p> <p>2 主務大臣は、特定物質等を業として使用する者に対し、排出抑制・使用合理化指針に即して特定物質等の排出の抑制又は使用の合理化を図ることについて指導及び助言を行うことができる。</p> <p>3 環境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排出の抑制についての指導及び助言の実施に関し、主務大臣に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p> <p>4 経済産業大臣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使用の合理化についての指導及び助言の実施に関し、主務大臣に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p> <p>5 第二項における主務大臣は、同項の指導及び助言の対象となる者の事業を所管する大臣とする。</p>	<p>제4장 특정 물질 등의 배출 억제 및 사용의 합리화</p> <p>제20조 (배출 억제·사용 합리화 지침의 공표 등)</p> <p>1. 경제산업대신 및 환경대신은, 조약 및 의정서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물질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자가 특정 물질 등의 배출 억제 또는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이하 '배출 억제·사용 합리화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p> <p>2. 주무대신은 특정 물질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 배출 억제·사용 합리화 지침에 따라 특정 물질 등의 배출 억제 또는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p> <p>3. 환경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 억제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의 실행에 관해 주무대신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4.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합리화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의 실행에 관해 주무대신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5. 제2항에서의 주무대신은, 해당 지도 및 조언의 대상이 되는 자의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을 말한다.</p>